

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81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4. 5. 27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5. 30.

2. 제안이유

- 민생경제 회복,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

3.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- 가. 세입예산안 : 해당 없음
- 나. 세출예산안
 - 2024년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50억 4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51억 36백만 원 대비 1.7% 감액(90백만 원)되었음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3년도				
	기정예산	추경예산(안)	증감	증감률	
총 계	5,136,412	5,046,412	△90,000	△1.7%	
일반회계	소 계	5,136,412	5,046,415	△90,000	△1.7%
	행정운영경비	151,795	151,795	-	-
	사 업 비	4,984,617	4,894,617	△90,000	△1.8%

4. 검토의견

가.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

(1) 세입예산안

- 해당 없음

(2) 세출예산안

- 2024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은 ‘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(사무관리비)’ 사업에서 90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임

< 2024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 내역 >

(단위: 천원)

구분	사업명 / 예산과목	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		증감액	증(감)액 사유
		기정	추경		
일반회계	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	441,081	351,081	△9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 제작되었던 홍보물 등의 보완 및 타부서 연계 홍보추진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감액 ○ 사무관리비 (200백만원 → 110백만원)
	기간제근로자등 보수	7,881	7,881	-	
	사무관리비	200,000	110,000	△90,000	
	시책업무추진비	5,000	5,000	-	
	특정업무경비	16,200	16,200	-	
	기타보상금	12,000	12,000	-	
	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	200,000	200,000	-	

나.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

(1) 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 (예산서 P.99, 사업별설명서 P.11~14)

- ‘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’은 약자와의 동행 가치와 주요 정책을 시민에게 홍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41백만원 대비 20.4%인 90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임

- 감액 조정되는 예산과목은 사무관리비로 동영상 제작에 60백만 원, 카드뉴스 등 제작에 20백만 원, 홍보물 제작에 1억 20백만 원 등 3개의 세부 사업에 합계 2억 원으로 구성·편성되어 있었으며, 이 중 홍보물 제작에서 90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임

〈 2024년 제1회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부산출내역 〉

과목구분	기정예산	추경예산(안)
사무관리비	○ 약자와의동행 정책 홍보 = 200,000천원	= 110,000천원 (△ 90,000천원)
	- 동영상 제작 = 60,000천원	= 60,000천원 -
	- 카드뉴스 제작 = 20,000천원	= 20,000천원 -
	- 홍보물 제작 = 120,000천원	= 30,000천원 (△ 90,000천원)
	증감사유	
기 제작되었던 홍보물 등의 보완 및 타부서 연계 홍보추진으로 인한 예산 절감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감액		

- 감액 사유는 기제작된 홍보물 등을 보완하여 사용하고 다른 부서와 연계 홍보추진으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, 이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

“사업계획의 변경”

-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그간의 ‘약자와의 동행 정책홍보’의 성과를 점검하고,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’24.3월 ‘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’을 재수립¹⁾하였으며, 기정 예산 4억 41백만 원 중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예산 4억 12백만 원에 대한 세부 사업 예산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

1) “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”, 동행정책담당관-2005, 2024. 3. 5.

< 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 세부운영(안) 및 추가경정예산(안) >

구 분	항 목	금 액	추가경정예산(안)
사무관리비	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	40,000 천원	20,000 천원 (△ 20,000 천원)
	시민영상공모전	50,000 천원	0 원 (△ 50,000 천원)
	각종 홍보물 제작 등	110,000 천원	90,000 천원 (△ 20,000 천원)
기타보상금	온라인 서포터즈 활동비 등	12,000 천원	12,000 천원
공가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	시민인지도 향상을 위한 광고비	200,000 천원	200,000 천원
합 계		412,000 천원	322,000 천원 (△ 90,000 천원)

※ 기정예산 중 사업비만 작성 (기간제근로자보수, 시책업무추진비, 특정업무경비 등 29,081 천원 제외)

- 재수립한 ‘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’을 기준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▲약자와의 현장소통 주간 운영에서 20백만 원, ▲시민영상공모전에서 50백만 원, ▲홍보물 제작에서 20백만 원 등 총 3건의 세부사업에서 90백만 원을 감액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
-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은 가능하나 시민의 알권리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. ‘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’은 2024년 본 예산 편성시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2023년 ‘약자와의 동행 서울어울림 광장 운영’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이며,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약자와의동행추진단에서는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계획 변경 과정의 재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

“예산 및 회계 원칙의 준수”

-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90백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있으며, ‘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’에 따르면 ‘약자와의 현장소통 주간 운영’에 기정예산 40백만 원, 감액조정 후 20백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음
-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로서 행정사무용품, 운영수당 등으로 지출할 수 있고, 기관의 일반 업무에 대한 소규모 용역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, 각종 행사 운영에 대한 비용 및 행사용역은 행사운영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함²⁾
- 따라서, ‘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’은 행사성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예산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
- 또한,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추진이 취소된 ‘시민영상공모전’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며, 포상금 지급은 「공직선거법」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를 선행했어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계획 변경 과정이 세심하지 못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 바임

“사업추진 의지와 성과 개선”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조정과 다른 부서와의 연계 강화 등으로 홍보 비용을 절감하여 재정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. 다만, ‘약자와의 동행’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가치

2) 행정안전부 [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] 참고

임에도 불구하고, 이번 예산 감액과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(안)은 서울시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전반적인 약자동행사업과 그 추진 의지가 축소되는 것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, ‘약자와의 동행’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빈틈없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

다. 종합 의견
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‘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’ 사업 중 홍보물제작 예산 90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려는 것으로, 기 제작된 약자와의동행 정책 홍보물을 보완·수정해서 사용하고 홍보기획관 등 타부서와 연계한 홍보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을 감액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
- 그러나 '24.3월 '2024 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계획' 재수립을 통해 ‘약자와의동행 정책홍보 및 교육’ 사업의 세부 내역을 조정하여 ‘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’, ‘시민영상공모전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, 계획이 재수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의 감액을 결정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 수립되었거나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함
- 또한,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2024년 본예산 심의시 보고되지 않은 사업(약자동행 현장소통 주간 운영)이 추가되고, 통계목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(행사성사업, 포상금 지급사업의 사무관리비 편성)이 이뤄지는 등 예산계획 수립·변경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이는 바, 추후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바임